■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9.25.>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

	구 분	명 칭	제	원 등	비고
검사기계		1. 만능재료시험기	"		,
	건설기계	2. 경도시험기			
		3. 진동·소음측정기			
		4. 매연측정기			
		5. 유압계			
		6. 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7. 전조등시험기			
		8. 회전반경측정기			
		9. 제동시험기			
		10. 일산화탄소측정기			
		11. 사이드슬립측정기			
		12. 경사각도시험기			
		13. 탄화수소측정기			
	타워크레인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라인스피드미터			
		3. 진동·소음측정기			
		4. 비파괴시험장비			
		5. 로드셀 또는 분동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조도계			
		9. 접지저항측정기			
		10. 무전기세트			
		11. 만능재료시험기			
기소시교	리이크레시 시작	12. 경도시험기	1.67	اد الم	고 11 기 위1
기술인력				이상	
	건설기계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			갈 채 취 기 를
		비기사	063	اد اید	제작·조립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2인 	이상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			선산업기사
		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을 포함
	F) (2) -7 -1) (2)	[O 의 이렇기사사 귀사의의	0.63	اد ام	할 것
	타워크레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3인 	이상	
		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1.란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자			

- 주: 1.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기계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계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건설기계제작·조립자와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체로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기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주 : 2.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를 제작·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기계 중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기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주 : 3. 2 이상의 검사기능이 있는 하나의 검사기계를 갖춘 때에는 해당 검사기 능이 있는 검사기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주 : 4.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일산화탄소측정 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동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